

마 산 향 도 선 사 회

51716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2 전화번호 (055)222-8122~5 팩스번호 (055)222-8126
http://www.msipilot.co.kr/ 회 장 : 조 용 웅 담당자 : 김정옥

문서번호 : 마도선 제2023-66호

시행일자 : 2023. 08. 25

수 신 : 선사 및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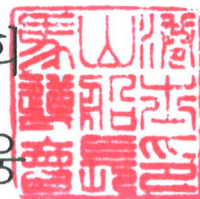
참 조 :

제 목 :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알림(이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도운협 제518호(2023.08.16.) 관련입니다.
3. 마산항 도선구간 내 도선선료 변경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2023. 09. 01부터 적용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붙 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 끝.

마 산 향 도 선 사 회
회 장 조 용 웅



"SAFER SHIPS, CLEANER SEAS"

중 앙 도 선 운 영 협 의 회



수 신 : 수신자 참조

참 조 :

제 목 :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알림(이첩)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007(2023.08.16.) 관련입니다.

2.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는 2015년 이후로 인상되지 않은 도선선료를 지난 8년간의 물가 인상률 및 경유가 변동을 감안하여 전체 도선선기본료를 9.4% 인상하고, 도선선 동승실적 완화 및 선원 2인 승선을 위해 다수의 도선구간을 운영하는 마산항 도선구의 3해리 초과 도선선료를 대산항 요금으로 적용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도선구인 포항, 목포,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 추가 조정하여 2023년 9월 1일자로 적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도선선료 변경신고에 대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수리되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 끝.

중 앙 도 선 운 영 협 의 회

위 원 장 조 용



수신자 : 각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위원장, 한국도선사협회장,
한국해운협회장,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

간 사 윤석배

시 행 중앙도운협 제518호 (2023. 08. 16.) 접 수 ()
우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오성빌딩 10층) / www.kmpilot.or.kr
전화 (02)784-6022 전송 (02)783-0931 / kmpilot@kmpilot.or.kr



해양수산부



수신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경유)

제목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알림

1. 중앙도운협 제517호('23.8.7.)호 관련 입니다.
2. 「도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귀 협의회에서 제출한 도선선료 변경신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장관



주무관

최대한

행정사무관

박찬수

과장

전결 2023.8.16.

최종욱

협조자

시행 항만운영과-5007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
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772

팩스번호 044-200-5789

/ mylightworld@korea.kr

/ 비공개(5)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1. 도선선료의 책정

○ 2023년도 제3차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실무회의(2023.07.28.) 협의 결과

- 역대 도선선료 조정 추이와 지난 8년간 물가상승지수 및 임금인상률 및 경유가 변동을 검토하고 2023년 9월 1일부로 전체 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를 9.4% 인상하고, 일부 도선선 운영이 어려운 도선구는 별도 요금으로 인상하는 안을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결의에 상정하기로 협의함

○ 2023년도 제2차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결의(2023.08) 결과

- 전체 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를 9.4% 인상하기로 하고, 도선선 동승실적 완화 및 선원 2인 승선을 위해 다수의 도선구간을 운영하는 마산항 도선구의 3해리 초과 도선선료를 대산항 요금으로 적용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도선구인 포항, 목포,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 추가 조정하여 2023년 9월 1일자로 적용하기로 협의·결정함

2. 변경신고 내용

○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별표 2】 도선선료(구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중 전체 도선구의 도선선료를 아래와 같이 적용함.

도선선 운항거리	도 선 선 료
○ 3해리 이하 ○ 3해리 초과	○ <u>7만1천580원</u> ○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한다)마다 <u>7천80원</u> (단, 마산, 대산항 도선구는 <u>9천80원</u> 으로, 인천·여수·평택·목포항 도선구는 <u>8천310원</u> 으로 한다)

(1) 대산항(보령)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 보령어항 ~ 보령도선점(검역요지)	67만2천30원	
○ 보령어항 ~ A1, A2, A3요지	29만250원	
○ 보령어항 ~ A4요지	34만8천300원	
○ 보령어항 ~ A5요지	40만6천340원	
○ 대산항 ~ 보령항간 육상이동	8만7천520원	실 비

(2) 부산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 가덕도선점 ~ 신항만	52만8천990원	
○ 제1도선점 ~ 용호부두	25만6천410원	
○ 제2도선점 ~ 다대포항	33만330원	

(3) 군산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 제1도선점 ~ 군산외항	32만7천930원	

(4) 인천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 도선선정계지~경인항도선점	71,580+D(도선선 운항거리) x 8.6ltr/mile x P(분기별 평균 경유가격, 연동제)	
○ 도선선정계지~경인항 인천터미널		
○ 육상이동 여비	16만4천100원	실 비

(5) 동해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 도선선정계지 ~ 동해항	17만7천130원	
○ 도선선정계지 ~ 삼척항	23만570원	
○ 도선선정계지 ~ 옥계항	29만1천650원	
○ 도선선정계지 ~ 묵호항	11만5천380원	
○ 도선선정계지 ~ 호산항	94만6천950원	
○ 도선선정계지 ~ 속초항	89만4천110원	
○ 도선선정계지 ~ 안인항	94만6천950원	
○ 육상이동 여비(호산항, 안인항)	23만6천원	실 비

(6) 제주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 제1도선점 ~ 제주항	47만5천650원	
○ 강정항도선점 ~ 강정항	47만5천650원	
○ 애월항도선점 ~ 애월항	159만7천240원	별도요금 신 설

(7) 목포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 제1도선점 ~ 정계지	75만5천350원	
○ 제2도선점 ~ 정계지	32만1천300원	
○ 목포신항 ~ 목포내항	15만7천920원	별도요금 신 설
○ 목포신항내에서의 이동	15만7천920원	
○ 목포내항내에서의 이동	9만5천140원	

(8) 평택·당진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 평택·당진항내에서의 이동	12만9천780원	
○ 장안평택·당진도선점 ~ 정계지(궁평항)	49만2천300원	
○ 입파도선점 ~ 정계지(궁평항)	27만3천500원	
※ 단, 도선 정계지까지 이동하는 육상이동에 대하여 육상이동료 21만8천800원을 청구한다		

(9) 포항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 제1도선점 ~ 포항항	16만1천190원	별도요금 신 설
○ 제1도선점 ~ 영일만항	22만2천260원	
○ 영일만항 ~ 포항항	17만6천460원	
○ 영일만항 ~ 정박지	17만6천460원	
○ 영일만항내에서의 이동	17만6천460원	
○ 포항항내에서의 이동	7만7천210원	

3. 적용 방법

- 적용 연월일 : 2023년 9월 1일, 00:00부터 시행.
- 해운협회 및 도선사협회 양 단체는 도선이용자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끝.

(변경 시행일 : 2023. 9. 1.)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별표 2】 도선선료(구 시행규칙 20조 관련)

도선선 운항거리	도 선 선 료		비 고
	현 행	변 경	
3해리 이하 3해리 초과	○ <u>6만5천430원</u> ○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한다)마다 <u>6천470원</u> (단, 대산항 도선구는 <u>8천300원</u> 으로, <u>인천·여수·평택·마산·목포항 도선구는 7천600원</u> 으로 한다)	○ <u>7만1천580원</u> ○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한다)마다 <u>7천80원</u> (단, <u>마산, 대산항 도선구는 9천80원</u> 으로, <u>인천·여수·평택·목포항 도선구는 8천310원</u> 으로 한다)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현 행	변 경	
○ 보령어항 ~ 보령도선점(검역묘지)	61만4천290원	67만2천30원	
○ 보령어항 ~ A1, A2, A3묘지	26만5천310원	29만250원	
○ 보령어항 ~ A4묘지	31만8천370원	34만8천300원	
○ 보령어항 ~ A5묘지	37만1천430원	40만6천340원	
○ 대산항 ~ 보령항간 육상이동	8만원	8만7천520원	실 비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현 행	변 경	
○ 가덕도선점 ~ 신항만	48만3천540원	52만8천990원	
○ 제1도선점 ~ 용호부두 간	23만4천380원	25만6천410원	
○ 제2도선점 ~ 다대포항 간	30만1천950원	33만330원	

(3) 군산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현 행	변 경	
○ 제1도선점 ~ 군산외항	29만9천750원	32만7천930원	

(4) 인천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현 행	변 경	
○ 도선선정계지~경인항도선점	65,430+D(도선선 운항거리) x 8.6ltr/mile x P(분기별 평 균 경유가격, 연동제)	71,580+D(도선선 운항거리) x 8.6ltr/mile x P(분기별 평 균 경유가격, 연동제)	
○ 도선선정계지~경인항 인천터미널			
○ 육상이동 여비	15만원	16만4천100원	실 비

(5) 동해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현 행	변 경	
○ 도선선정계지 ~ 동해항	12만4천230원	17만7천130원	
○ 도선선정계지 ~ 삼척항	19만5천400원	23만570원	
○ 도선선정계지 ~ 옥계항	24만7천160원	29만1천650원	
○ 도선선정계지 ~ 묵호항	9만7천780원	11만5천380원	
○ 도선선정계지 ~ 호산항	80만2천500원	94만6천950원	
○ 도선선정계지 ~ 속초항	75만7천720원	89만4천110원	
○ 도선선정계지 ~ 안인항	80만2천500원	94만6천950원	
○ 육상이동 여비(호산항, 안인항)	20만원	23만6천원	실 비

(6) 제주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현 행	변 경	
○ 제1도선점 ~ 제주항	43만4천780원	47만5천650원	
○ 강정항도선점 ~ 강정항	43만4천780원	47만5천650원	
○ 애월항도선점 ~ 애월항	-	159만7천240원	별도요금 신 설

(7) 목포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현 행	변 경	
○ 제1도선점 ~ 정계지	64만130원	75만5천350원	
○ 제2도선점 ~ 정계지	27만2천290원	32만1천300원	
○ 목포신항 ~ 목포내항	-	15만7천920원	별도요금 신 설
○ 목포신항내에서의 이동	-	15만7천920원	
○ 목포내항내에서의 이동	-	9만5천140원	

(8) 평택·당진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현 행	변 경	
○ 평택·당진항내에서의 이동	11만8천630원	12만9천780원	
○ 장안·평택·당진도선점 ~ 정계지(궁평항)	45만원	49만2천300원	
○ 입파도선점 ~ 정계지(궁평항)	25만원	27만3천500원	
※ 단, 도선 정계지까지 이동하는 육상이동에 대하여 육상이동료 21만8천800원을 청구한다			

(9) 포항항

도 선 구 간	도 선 선 료		비고
	현 행	변 경	
○ 제1도선점 ~ 포항항	-	16만1천190원	별도요금 신 설
○ 제1도선점 ~ 영일만항	-	22만2천260원	
○ 영일만항 ~ 포항항	-	17만6천460원	
○ 영일만항 ~ 정박지	-	17만6천460원	
○ 영일만항내에서의 이동	-	17만6천460원	
○ 포항항내에서의 이동	-	7만7천210원	